

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9. 8. 화순군수
- 나. 회부일자 : '99. 9. 1
- 다. 상정일자 : '99. 9. 1 (제7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김종철
- 나. 개정사유
 -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 및 명칭을 변경키 위함.
- 다. 주요내용
 - 별정직 임용범위 변경 (안 제2조 제3항)
 - 여성복지담당 → 가정복지담당
 - 사회복지담당 → 삭제
 - 별정직 명칭 도표준안 수용 (안 제2조 제3항)
 - 부녀상담원 → 여성복지담당원
 - 아동복지지도원 → 아동복지지도원
 - 농기계교관 → 농기계교육교관
 - 문화재관리원 → 문화재관리요원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양정열)

- 정부의 제2단계 구조 조정 계획에 의거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와 명칭을 변경키 위한 조례안임.
-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중 사회복지과장이 포함되었으나 사회산업과로 분장업무와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제외되었으며 여성복지담당을 가정복지담당으로 변경함.

- 별정직 공무원의 명칭도 관련 법규 및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의 표준 명칭으로 통일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혼동이 없도록 행정의 일관성 유지에 노력하였다고 평가됨.
-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와 협의하였으며 조례·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답변요지

“ 생 략 ”

5. 토론요지

“ 생 략 ”

6. 심사결과

“ 원안가결 ”

첨 부 :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3항 제1호를 “여성복지상담원”으로 하고, 제2호를 “아동복지지도원”으로 하고, 제3호를 “농기계교육교관”으로 하고, 제7호를 “가정복지담당”으로 하고, 제8호를 “문화재관리요원”으로 하며, 제9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